



등 록 번 호 : 20160400
최초 등록일 : 2016.04.29.
최종 등록일 : 2025.03.10.

haeseongfs@haeseongfs.com

[통 큰 갈 비]

정 보 공 개 서

㈜해성외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주소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129호

대표전화 : 1522-8927

대표팩스 : 031-986-892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22-892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8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2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3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3년, 2022년, 2021년)

[별첨2] 주방 및 홀 집기기물 목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해성외식	통큰갈비 외 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129호			
	설립일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3.4.	2016.3.4.	2016.3.2.	김해성	1522-8927	031-986-8927
	법인등록번호		110111-5990802	사업자등록번호		799-87-0033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해성	통큰갈비 외 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12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해성	1522-8927	031-986-892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장금진	통큰갈비 외 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12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해성	1522-8927	031-986-892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통큰갈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통큰갈비	
상 호	통큰갈비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3429080000
	가성비 높은 성공창업 프랜차이즈! 	등록번호 : 4103821090000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가성비 높은 성공창업 프랜차이즈! 	간판, POP, 기타 사인물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936,078	1,670,588	265,489	4,178,606	-593,937	-595,200
2022년	1,609,910	1,708,229	-98,318	4,490,500	-381,030	-363,808
2023년	1,500,473	1,386,112	114,360	4,669,462	131,527	93,596
당사의 재무현황의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해성	대표	2016.3.4.~2018.6.7.	사내이사	경영 총괄
			2018.6.8.~현재	대표	경영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장금진	감사	2016.3.4~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해성외식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통큰갈비배달이야기(등록번호:20211080)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해성외식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2022년 11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학담(등록번호:20211082)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해성외식	가맹사업 경영	2021.10.19. ~ 현재	통큰갈비두번째이야기(등록번호:20211520)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통큰갈비 (상표권)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간판, 내·외부 사인물, 집기와 비품류에 사용을 허용	등록결정(일반) (2015.12.22)	출원번호 : 4120150018675 (2015.4.21) 등록번호 : 4103429080000 (2015.12.29)	김해성	2025.12.29
		등록결정 (2016.12.21)	출원번호 : 4120160019308 (2016.04.26) 등록번호 : 4103821090000 (2016.12.29)		2026.12.29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간판, 내·외부 사인물, 집기와 비품류에 사용을 허용 ※ 프리미엄무한리필 유형의 가맹점만 사용가능	등록일자 2024.07.15.	출원번호 : 40-2024-0060049 등록번호 : 제40-2222109호	주식회사 해성외식	2034.07.15.

위에 명시한 권리 범위 내에서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에서 디자인 및 제작하여 전달,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반드시 가맹 본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중인 상표의 경우, 상표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통큰갈비]가맹사업 현황

1. 통큰갈비를 시작한 날: 2016년 3월 2일

2. 통큰갈비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해성외식	통큰갈비	성기준	2016.3.2. ~ 2018.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길 14 (창천동), 4층
(주)해성외식	통큰갈비	김해성	2018.6.8. ~ 현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129호

3. 통큰갈비 업종

영업표지	업종	
통큰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소고기,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통큰갈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1	41	-	38	38	-	38	38	-
서울	8	8	-	7	7	-	7	7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2	2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2	2	-	1	1	-	1	1	-
울산	1	1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0	10	-	8	8	-	8	8	-
강원	5	5	-	6	6	-	6	6	-
충북	3	3	-	1	1	-	1	1	-
충남	2	2	-	4	4	-	4	4	-
전북	2	2	-	2	2	-	2	2	-
전남	-	-	-	-	-	-	1	1	-
경북	-	-	-	-	-	-	1	1	-
경남	1	1	-	4	4	-	3	3	-
제주	3	3	-	2	2	-	1	1	-

5. 바로 전 3년간 통큰갈비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74	1	2	32	3	41
2022	41	6	1	8	0	38
2023	38	9	0	9	0	38

6. 통큰갈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해성외식	통큰갈비 배달이야기	20211080	기타외식	-/1	-/-	-/-
가맹본부	(주)해성외식	통큰갈비 두번째이야기	20211520	기타외식	1/-	-/1	-/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통큰갈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38	392,603	8,697	1,121,208	21,692	138,663	2,623	
서울	7	630,227	16,444	1,121,208	21,692	245,438	5,460	
부산	1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구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 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 없음						
대전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 없음						
세종	-	해당 없음						
경기	8	288,505	6,498	549,624	11,897	142,164	2,623	
강원	6	334,179	7,611	569,587	13,026	187,787	4,245	
충북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남	4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북	2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북	1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남	3	해당 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 없음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가맹점 중 2023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서울지역 서울신월점, 경기지역 송탄지산점, 안성석정점, 전남지역 광양서천점 등 4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영업한 서울지역 난곡점, 경기지역 포천점, 충남지역 금산상리점, 홍성점, 경북지역 문경점 등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수 38개가 아닌 3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의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통큰갈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8	1,153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통큰갈비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25~26쪽을 참고 하십시오. 아래의 금액은 당사가 경영하는 통큰갈비배달이야기, 통큰갈비두번째이야기의 광고비 및 판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9,865	 (비공개)	-	
광고		(비공개)	89,146	 (비공개)	-	
판촉		(비공개)	30,718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승실대역 지점	서울 동작구 상도로37길 76 리치타운	02-822-04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해당은행에 계약 체결 후 2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험회사 : (주)서울보증보험, 상품명 : 프랜차이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해성외식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통큰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 실내 인테리어비, 주방·홀 집기비 및 별도공사 비용과 식재료 구매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에 있어 가맹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팔백팔십만원
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일천만원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교육 훈련비	3,300	계약일	원칙적으로 반환 안됨. 가맹계약서 <제16조 제4항 참조> <제16조 제5항 참조>	재료비 및 교육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교육비로 비용 소요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가맹비	5,500	계약일	원칙적으로 반환 안됨. 가맹계약서 <제16조 제4항 참조> <제16조 제5항 참조>	가맹점모집 및 개점진행에 따른 비용소요	브랜드사용, 매뉴얼제공, 오픈지원 등

가맹비와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 ①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귀책사유(단순변심 포함)로 해약하는 경우 위약 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교육이 시행된 경우 개점 전 교육비는 소멸합니다)
- ② **가맹점 개점 이후** 최초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계약기간 개월 수만큼 반환합니다.
- ③ 위 ①, ②의 상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16조 제4항 내지 제16조 제5항을 참조 바랍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이행보증금	10,000	영업개시 2일 전까지	물류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처리 등	계약 종료 및 해지 후 물류대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산한 후 보증 보험을 해지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교육 훈련비	3,300	
가맹비	5,500	
이행보증금	10,000	부가세 없음
총계	18,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표준형 유형의 가맹점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84,777	2,119			132㎡(구 40평)기준
인테리어 (간판포함)	가맹본부	57,200	1,430	시작일 30% 중도금 40% 완료 후 30%	공사 전 계약취소	
추가공사	가맹본부	별도 책정		공사계약서에 따름	공사 전 계약취소	닥트공사(외부입상), 각종 인.허가, 철거, 전기 증설, 가스공사, 냉난방기, 외부공사, 상하수도, 지방경비 별도
주방, 홀기물	가맹본부	24,497	612	시작일 50% 완료일 50%	상품 미공급시	
기타 소모품	가맹본부	별도 책정		물품 수령일	상품 미공급시	
초도물품	가맹본부	3,080		물품 수령일	상품 미공급시	

② 프리미엄무한리필형 유형의 가맹점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129,000	2,580			165㎡(50평형)기준
인테리어 (간판포함)	가맹본부	80,000	1,600	시작일 30% 중도금 40% 완료 후 30%	공사 전 계약취소	
추가공사	가맹본부	별도 책정		공사계약서에 따름	공사 전 계약취소	닥트공사(외부입상), 각종 인.허가, 철거, 전기 증설, 가스공사, 냉난방기, 외부공사, 상하수도, 지방경비 별도
주방, 홀기물	가맹본부	42,500	850	시작일 50%	상품	

				완료일 50%	미공급시 상품	
기타 소모품	가맹본부	별도 책정		물품 수령일	미공급시 상품	
초도물품	가맹본부	6,500		물품 수령일	미공급시 상품	

위 표의 금액은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사 및 도면 작성 후 확정됩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면적과 무관하게 2,200(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오픈 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점포가 없을 경우)	당사 가맹사업팀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원하는 지역 내 매물 파악 → 추천매물 제시 → 가맹희망자의 가부 결정 ※가맹희망자가 당사 가맹사업팀의 추천점포 입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은 가맹희망자의 부담입니다.
가맹희망자 (점포가 있을 경우)	당사 가맹사업팀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점타당성 결과 도출 → 당사 가부 여부 결정 → 가맹희망자의 계속 여부 결정 ※가맹사업팀이 입점타당성을 조사하여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의사를 묻게 됩니다.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희망자에게서 원하시더라도 개설이 불가합니다. 부적합 판단이 난 경우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따르며 이후 진행은 (점포가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필요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통큰갈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총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예치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50%	30%	20%
납부일		계약일+2일까지	착공일-2일까지	착공일+14일까지	영업개시-3일까지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25~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성격에 따라 총광고비의 50%, 25% 중 일부금액	광고 후 1개월 이내	반환불가	광고제작비로 소요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판촉종료 후 7일 이내	반환불가	판촉비로 소요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계약서에 따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취소시	인건비, 재료비로 소요	교육필요시 지급
POS 사용료		계약서에 따름	계약서에 따름	반환불가	프로그램 유지비로 소요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0쪽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간판변경 후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경우 발생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QSC감독	QSC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	비정기	문의 : 가맹본부
행정자료감독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 지도 및 점검	분기별 1회	
회계처리	상품매출입, 지급수수료(가맹비, 교육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등 회계 관련 점검	분기별 1회	
재고관리	상품 재고 및 관리 점검	비정기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당사가 납품한 물품대금의 미결제분은 정산하여 납부를 완료하여야 양도를 허락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정보공개서 23~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인이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당사와 새로운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가맹금 880만원(부가세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원(부가세 없음, 이자 발생하지 않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9~1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통큰갈비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7일 이내에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운영매뉴얼,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액으로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가맹본부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완전품만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통큰갈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부재료의 품목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통큰갈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형 유형의 가맹점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무한리필	A코스 (스테이크갈비)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위반 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하며, 가맹계약 제38조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육류메뉴가 아닌 점심메뉴 및 사이드메뉴, 주류 및 음료의 판매는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B코스 (스테이크갈비+삼겹살)			
단품	스테이크갈비(매콤/양념)			
	삼겹살			
	꽃살(갈비본살)			
	갈비살(늑간살)			

② 프리미엄무한리필형 유형의 가맹점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무한리필	성인	1. 기재 외 상품·용역 판매금지 2. 무한리필 A코스는 스테이크 갈비, 삼겹살, 닭갈비 무한리필 로 구성하여야 함	위반 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가맹계약 제38조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사이드메뉴 및 주류, 음료의 판매는 제한 없음
	(A코스+샤브샤브)			
	어린이	3. 무한리필 B코스의 샤브샤브 는 돈육살+6종 채소로 구성하 여야 함 4. ①떡볶이, 튀김 등 8종 이상 의 메뉴, ②무한리필 A코스 구 성메뉴, ③샤브샤브 재료를 비 치한 셀프바를 운용하여야 함		
단품	꽃살			
	갈비살			
	삼겹살			
	닭갈비			
	스테이크갈비			
	셀프바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적용일 3일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

만 19세 미만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	--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① 표준형 유형의 가맹점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무한리필	A코스 (스테이크갈비)	성인	14,000 ~ 15,000	변동 시 사전 통지	
		어린이	8,000		
	B코스 (스테이크갈비+삼겹살)	성인	15,000 ~ 16,000		
		어린이	9,000		
스테이크갈비(매콤/양념)		250g	10,000		
삼겹살		150g	10,000		
꽃살 (갈비본살)	단품	150g	13,000		
	무한리필 이용시	100g	5,000		
갈비살 (늑간살)	단품	150g	13,000		
	무한리필 이용시	100g	5,000		

② 프리미엄무한리필형 유형의 가맹점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무한리필	성인	A코스	16,900	변동 시 사전 통지	
		B코스(A코스+샤브샤브)	18,900		
	어린이	8~10세	11,000		
		5~7세	9,000		
단품	꽃살	단품	150g		
		무한리필이용시	100g		
	갈비살	단품	150g		
		무한리필이용시	100g		
	삼겹살		200g		
	닭갈비		250g		
	스테이크갈비		250g		
	셀프바		1인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인근 경쟁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당사의 핵심역량인 '합리적인 가격'에 위배되므로 불가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양념 또는 양념되지 않은 돈목살을 고객이 숯불로 익혀 먹는 메뉴를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업종	통큰갈비	-

※ 통큰갈비는 내점 고객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방식을 채택한 영업표지로서, 가맹본부가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영업표지 중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방식을 채택한 통큰갈비배달이야기와는 판매 메뉴의 일부를 공유하는 점 외에 판매형태, 메뉴구성 전반, 가맹점의 운영방식 등에서 차별화된 영업표지입니다. 따라서, 통큰갈비는 통큰갈비배달이야기와 동일한 업종이 아니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통큰갈비배달이야기를 영업표지로 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영업지역은 가맹점 위치기준 직선거리 700m 내외로 지역의 상권·도로사정 등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통큰갈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통큰갈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통큰갈비 배달이야기	돈묵살	판매형태가 다름
		돈삼겹살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통큰갈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만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통큰갈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상품 대금 또는 기타 금전 등의 지급의무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8조
○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공급받은 경우	
○ 총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2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제13조 제7항에 의한 점포설비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계약상의 의무위반 및 가맹계약서 별첨[7]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액이 가맹계약 제18조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의 5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제28조 제3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행정벌 또는 형사벌을 받은 경우	
○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즉시해지사유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계약서의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40조
○ 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화로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급하게 적용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사전 구두협의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동의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변경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변경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변경 완료	변경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하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본부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잔여기간까지의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훈련비와 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양수인이 당사의 동의를 얻어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와 영업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비, 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도인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해 영업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26~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 사유 발생 → 공동상속인 중 대표 지정 → 상속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의사 서면 통지 → 당사에서 운영자 자격 심사 →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계약 작성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불가능	-	-	-

당사는 가맹점운영의 대리행사,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운영자격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하나 이상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② 미성년자
- ③ 파산자
- ④ 5년 이내 가맹사업 운영에 관련된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
- ⑤ 기타 가맹사업 운영에 관련된 허가 및 자격, 면허가 없는 자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가 당사와 계약하여 통큰갈비를 운영하는 계약 기간 중 및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사의 동의 없이 귀하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 등 어떠한 형태로든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계약 종료일 이후의 경업금지는 가맹계약서 별첨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정하며,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일천만원(W1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맹계약서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양념 또는 양념되지 않은 돈육살을 고객이 숯불로 익혀 먹는 메뉴를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업종	-	문의 :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통큰갈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pm12:00 ~ am02:00	26일 이상	문의 : 가맹본부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위와 같이 지정하나, 필요시 슈퍼바이저팀과 상담 후 당사의 허가를 얻은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매출액에 따라 가변	직접 근무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를 비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 정확성, 청결, 위생 등	담당자 매장 방문 → 항목별 점검 실시 → 미진항목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 사전 연락 후 방문	가맹본부	

당사는 가맹점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관리 ·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 감독의 권한은 본사의 슈퍼바이저와 물류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배송직원에게 있으며 권한의 우선순위는 슈퍼바이저에게 있습니다.

관리 · 감독의 범위는 크게 '운영지침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계약 위반에 관련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확인 서명이 없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사항 적발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운영지침 준수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지침은 메뉴얼과 비정기적으로 전달되는 영업지침서를 포함합니다. 관리·감독은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되 방문 전 연락을 드립니다. 방문의 빈도는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마케팅계획과 귀하의 점포에 운영컨설팅을 위하여 귀하의 점포에 해당하는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OS와 별도로 장부를 기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통근갈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중 해당 가맹점 매출액이 전체 가맹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분담금 확정 → 행사진행 → 청구 및 지급	대중매체 광고 전국단위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중 해당 가맹점 매출액이 전체 가맹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		
광고 지역행사	상 동				광역지자체 구역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매장이 전체가 아닐 경우 부담액은 별도 결정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50%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납부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별도 결정			

매출액은 행사일이 포함된 달의 2개월 이전으로 3개월 평균치로 합니다.(예:5월 행사일 경우 1,2,3월 매출 평균) 매출액의 책정은 POS 기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광고·판촉물에 대한 디자인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당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판촉물을 제작하는 것은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포함)으로 인한 해약 시에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해약요청일별로 위약별이 발생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별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30일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50%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 오픈 이전	최초예치가맹금의 70%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35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5조 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8조에 따라 합의 또는 일방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시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가맹점의 계약해지 전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의 일평균 매출(POS 매출기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그 위반일 당 일십만원(₩100,000)을 가산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의 존속 중 및 계약종료 후 1년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천만원(₩10,000,000)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계약서 제10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제10조의 계약발효일로부터 50일 내(연장에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간 내)에 개점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가맹본부가 투입한 비용을 배상함과 별도로 팔백만원(₩8,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최초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한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에 따른 위약별 지급으로 제10조의2의 위약별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32m²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평균 10~12일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가맹비, 교육훈련비, 계약이행보증금)	D-28(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설비, 집기류 포함)	D-24~5(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9(5일)	
간판	- 간판 공사	D-2~4(3일)	
초도 물품	-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 등	D-1~3(3일)	
POS	- POS 설치	D-1(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면적 132m²기준)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① 점포 선정 과정에서 적정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점포선정이 지체되는 경우
- ② 점포의 형태가 특수하여 실내외 공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③ 개점교육 미 이수 및 평가점수가 60% 이하일 경우 재교육을 실시로 개점 연기
- ④ 공사 및 설비, 비품의 대금결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정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개점을 연기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업체의 현장 실사 및 도면 작성 후 확정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하여백]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통큰갈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1522-8927)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통큰갈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교육	회사 소개 개점시 인허가 취득 방법 조리방법 / QSC관리방법 식육관리 방법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소그룹강의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영업시작 1주 이전	필수 교육 미이수 또는 교육평가 60% 미달 시 개점연기
보수 교육	신규교육 사항 점검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공고 후 1개월 이내	별도 지정/ 지정 시 필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사항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통큰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점 교육	4일(이론 및 실습)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사안에 따라 별도 지정	165 / 1일 당	별도지정/지정 시 필수
특별 교육	사안에 따라 별도 지정	165 / 1일 당	별도지정/지정 시 필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실제 가맹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개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8조에 따라 개점 전까지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점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임의로 개점을 하실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1주 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불참사유를 전달하셔야 하며 무단으로 불참 시 가맹계약서 38조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 1522-892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로의 요청**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3년~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주방 및 홀 집기기물 목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